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 12.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1.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1. 11. 17.

2. 제안이유

- 거창 근대병원의 효시이자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근대 의원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자생의원 부지를 매입하여 근대문화유산 등록 및 의료박물관, 근세역사 전시관 활용 등 의료·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주변지역을 다양한 문화예술과 연결하여 군민의 문화휴식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
- 우주와 생명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과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체험관광 중심점 구축과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
- 2012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체감으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시설은 벽면 균열 및 노후화로 건물의 신축이 시급함

3.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기준가격	비고
계		3건		16,908.28	8,848,577	
자생의원 부지	토지/ 건물	거창읍 중앙리 240번지의외 5필지	계	1,408.28	1,029,676	사업비 : 1,846 백만원
			토지	962	962,000	
			건물	446.28	67,676	
거창월성 창의 우주체험관 건립	건물/ 우주 체험 전시 시설	북상면 월성리 1608	계	750	3,000,000	사업비 : 3,000 백만원
			건물	750	1,350,000	
			전시시설		1,650,000	
보건기관 이전·신축 부지	토지/ 건물	거창읍 송정리 82-2번지의외 6필지	계	14,750	4,818,901	사업비 : 9,629 백만원
			토지	12,098	522,661	
			건물	2,652	4,296,240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자생의원 부지 매입안은 거창읍 중앙리 240번지의외 5필지의 부
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 거창 근대병원의 효시이자 문화재산인 자생의원을 근대문화유
산으로 등록하여 의료박물관, 근세역사전시관 활용 등 의료·문

화자산으로 보존하여 문화휴식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거창월성 창의 우주체험관 건립안은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월성청소년수련원 내에 우주와 생명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과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체험관광 중심점 구축과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과학관 1동과 우주체험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30억원(국비10억원, 군비2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 2011년 7월 20일 거창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음.

- 보건기관 이전·신축 사업안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체감으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읍 송정리 82-2번지의 6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 총사업비는 96억2천9백만원(국비 28,64억원, 도비 7.15억원, 군비 60.50억원)이며 2012년 당초예산에는 40억9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 보건소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2011. 10. 20. 통보)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음.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

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